

사회적 법의 침해



제1장 범죄수법 상세모사

▶ 사례13

의결번호	제2016-861호
매 체 명	인터넷 일요시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10월 26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충격〉 아무나 만드는 사제총 제조법

1. 보도내용

「(전략) 실제로 유튜브브서 ‘○○○○’ ‘○○○○○○’ 등으로 검색하면 3,640만건의 결과가 나열된다. 흔히 생각하는 총에서부터 일반적인 볼펜으로 만드는 총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재료도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검색어에 ‘○○○○’ 등을 추가하면 폭죽이나 화약 제조법도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철제 탄환을 사용하는 엽총 제작법까지 등장한다.

‘○○○○○○’이라는 제작자가 올린 동영상은 약 20분 동안 쇠파이프와 쇠파대, 스프링 등의 재료를 사용해 똑딱 총기를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 총기를 통해 발사된 구슬은 나무 합판을 부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제 총기 제작법이 상세히 묘사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검색 방법 및 동영상 제작자를 적시하면서, 사제 총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사제 총기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성관련 보도

▶ 사례14

의결번호	제2016-260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6월 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 ... 학부형이 집단 강간

1. 보도내용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 ... 학부형이 집단 강간」의 제목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제목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자살 관련 보도

▶ 사례15

의결번호	제2016-326호
매 체 명	경기매일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 25일자 15면
기사제목	○○시청 공무원, 옥상서 목 매 숨져

1. 보도내용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청 옥상서 자살 충격

○○시청이 ○급 이하 직원에 대해 전보발령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 인사에 불만을 품은 시 공무원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시청 ○○출장소 직원 K 모(○○세)씨가 시청 본관 3층 옥상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중략)

○○○○관리 ○급인 K씨는 동네 ○○시설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이번 전보인사에서 ○○출장소로 발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일단 K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 나이, 직급, 근무지,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16

의결번호	제2016-783호
매 체 명	아주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9월 6일자 23면
기사제목	“서울로 직장 구하러 간다던 딸아...” 안산 사무실서 남자 3명과 숨진채 발견

1. 보도내용

「(전략) 발견 당시 A씨 등은 사무실 안에 놓아둔 ○○가스 용기에 호스를 연결한 뒤 비닐 봉지를 뒤집어쓴 상태였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스를 호스에 연결하고 비닐을 뒤집어쓰는 자살 방법 및 자살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마약 관련 보도

▶ 사례17

의결번호	제2016-170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4월 21일 10면
기사제목	신종 마약 ‘○○○○’ 밀반입 수 억원 어치 유통

1. 보도내용

「담배에 몇 방울 뿌려 피우는 신종마약 ‘○○○○’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H씨는 손세정제로 위장한 ‘○○○○’을 국제우편으로 이 씨에게 부쳤다. 이 씨는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이를 ○ml씩 안약통에 나눠 담은 뒤 ○○만 ~ ○○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팔았다. 이 씨 일당은 유학생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을 권하고 SNS에 판매 게시물을 올렸다. 구매자를 섭외하면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다단계식 영업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판을 세우고 사업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에 유통된 ‘○○○○’은 ○○○ 성분 합성 대마 계열 마약이다. 2014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담배에 ○○ 방울쯤 떨어뜨려 간단하게 피울 수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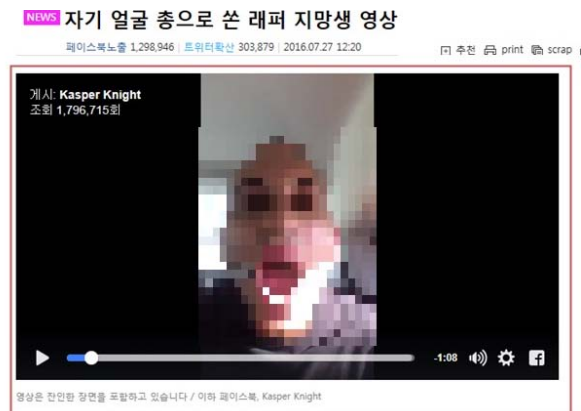
제5장 충격, 혐오 보도

▶ 사례18

의결번호	제2016-336호
매 체 명	위키트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7월 27일자 세상에 이런 일이면
기사제목	자기 얼굴 총으로 쏜 래퍼 지망생 영상

1. 보도내용

「자기 얼굴 총으로 쏜 래퍼 지망생 영상」 제하의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학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 한다.

제6장 기사형 광고

▶ 사례19

의결번호	제2016-203호
매 체 명	뉴스엠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2016년 4월 5일 헬스면
기사제목	성형 한류에서 안티 에이징까지 세계로

1. 보도내용

「김○○ 기자」

「(전략) 강남구 신사동에 단독빌딩으로 위치한 ○○○성형외과병원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21개층 빌딩 전체 규모의 의료시설과 고객중심의 호텔급 인테리어로 명성이 자자하다. (중략)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성형외과에서는 ‘V라인 사각턱수술’과 3차원 광대회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V라인 사각턱수술은 기존 U라인 사각턱수술에 턱 끝의 넓이를 축소시켜 주는 수술을 추가함으로써, 양 옆의 각진 턱을 깎아 내는 동시에 턱 끝을 V자 모양으로 날렵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이다. V라인의 핵심인 턱 끝도 동시에 가름하게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안면윤곽수술의 하나인 광대뼈 축소술 중 ‘3차원 광대회전술(3D malar rotation)’은 ○○○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깎아 내기만 하거나 단순히 옆 광대만 넣어주는 방식의 수술법이 아니라 광대가 내측으로 회전하면서 이동하여 광대뼈의 실제 볼륨 축소와 구조 개선이 가능한 수술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